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37 발의연월일: 2020. 9. 14.

발 의 자:백혜련·박주민·박 정

황운하 · 김진애 · 이동주

안호영 · 이원욱 · 소병철

박완주 • 박홍근 • 김홍걸

김성환 · 양이원영 · 이재정

송기헌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"공수처"라 한다)를 신설하는 내용으로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제정(2020. 1. 14. 공포, 7. 15. 시행)됨.

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났는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장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위원 추천권을 지닌 교섭 단체의 비협조로 인해 국민이 고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(이하 "수사처장"이라 한다) 임명 및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음.

이는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의무를 해대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 스로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보완 입법이 불가피한 상태 라고 판단됨.

이에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"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"과 "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"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음(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).

또한 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가 소집되면 30일 이내에 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였고, 단 1회에 한하여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(안 제6조제8항 신설).

이를 통해 최장 50일 이내에는 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 회 구성과 의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"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"을 "위원장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,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·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,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-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,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1.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
- 2.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
- ⑧ 제7항에 따라 소집된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처장후보자 추천을 위한 의결 절차를 마쳐야 한다. 단, 1회에 한하여 위원회 의결로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	제6조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
보추천위원회) ①・② (생 략)	보추천위원회) ①·② (현행과
	같음)
③ <u>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</u> 위	③ <u>위원장은</u>
원 중에서 호선한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
	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
	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
	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
	고,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
	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
	<u>다</u> .
<신 설>	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
	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
	않은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, 국
	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
	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
	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
	위촉한다.
	1.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
	<u>장</u>
	2.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

	의회 이사장
<u>⑤</u> (생 략)	<u>⑦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⑧ 제7항에 따라 소집된 추천
	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처장후
	보자 추천을 위한 의결 절차를
	마쳐야 한다. 단, 1회에 한하여
	위원회 의결로 10일 이내의 기
	한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.
<u>⑥</u> ~ <u>⑧</u> (생 략)	<u>⑨</u> ~ <u>⑪</u> (현행 제6항부터 제8
	항까지와 같음)